

【 주간 포커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배경

유진아 연구위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은 총 채권의 75% 이상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소액채권자의 권리 강화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율권 및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다. 재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건설사 부실이 금융기관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의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이 2011년 4월 18일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 재입법안에 따르면 담보채권 총액의 75% 이상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합의로 구조조정을 개시할 수 있음.
 - 현재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이 동의해야 구조조정을 개시할 수 있음
- 또한 구조조정에 찬성하는 금융기관이 반대하는 금융기관의 채권을 6개월 이내에 매입하여야 함.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기관 채권협의회가 수용 여부를 평가하고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 시작됨.

□ 재입법안은 소액채권자의 권리와 대상기업의 자율권 및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갖고 있던 논란의 여지를 축소시킴.

- 기존 법안의 경우 상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배하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소액채권자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존재

□ 재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건설사의 부실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0년 말부터 건설사가 연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어 동 부실사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

- 최근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건설업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다수의 건설사가 부실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
 - 2010년 12월말부터 2011년 4월 현재까지 동일토건(시공능력 49위¹⁾), 월드건설(71위), 진흥기업(43위), LG(47위), 삼부건설(34위), 동양건설산업(35위) 등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표 1> 건설업과 전 산업 재무지표 비교

	EBITDA/ 금융비용(배)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현금성자산/ 단기 차입금(%)	
	건설	전 산업	건설	전 산업	건설	전 산업	건설	전 산업
2007	2.5	5.6	270	121	40.2	28.3	36.3	71.6
2008	1.7	4.8	282	143	40.7	30.7	29.1	56.2
2009	1.6	4.7	288	133	39.2	30.3	35.8	62.2

주: 전산업은 금융기관과 공기업을 제외한 합산재무제표 결과
 자료: 한국신용정보평가(2011), 2011 산업위험 평가

□ 재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실기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신규자금 지원 여부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은 기존채무를 재조정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신규자금은 법적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를 지원할 유인이 있음.
-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법원이 주도하여 기존 채무를 재조정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1) 2010년 9월 기준 건설업체 수는 56,815개인데 기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0개사 공시

<표 2> 기업구조조정방법의 주요 차이점

	기촉법	통합도산법
목적	시장 기능에 의한 상시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	채무기업의 효율적인 회생 도모 또는 회생이 어려운 기업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
적용 범위	채권금융회사(일반 상거래·해외 채권자는 제외)	모든 채권자(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상거래·해외 채권자도 포함)
절차	주로 비금융회사의 부채가 적을 경우 금융회사만의 자율적 채권행사 유예(감독원장요청)후 구조조정 진행	기업의 모든 부채를 법원이 동결한 후 법원의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신규자금 지원	통상 채권금융회사의 신규자금 지원이 있음(우선변제권 부여)	통상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음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 대응으로 신속한 진행가능:「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 마련 최장 4개월 소요	법상 엄격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 이해 조정하면서 진행 : 「통합도산법」상 회생계획 마련 통상 10개월 내외 소요
가결 요건	총 채권액 3/4이상의 동의로 제반 의사 결정	담보채권자(3/4이상), 무담보채권자 (2/3이상), 주주(1/2이상) 동의로 제반 의사 결정

자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0. 11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이 통과되어 부실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PF 대출 등 부실채권상각의 영향이 축소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음.

<표 3> 금융권 PF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권역별	'08.12말	'09.6말	'09.12말	'10.6말	'10.12말
PF대출	전금융권	83.1	84.0	82.4	74.2	66.5
	은 행	52.5	54.1	51.0	44.9	38.7
	저축은행	11.5	11.0	11.8	11.9	12.2
	보 험	5.5	5.5	5.7	5.4	4.9
	금융투자	2.9	2.8	2.7	2.5	2.2
PF대출 연체율		4.39	5.91	6.37	7.31	12.86

자료: 금융감독원, 제299회 국회(임시회) 보고자료, 2011.4.15

- 다만 동법이 2001년 입법될 당시 주장되었던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에 동의하는 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킨다’는 목표가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채권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담하기 보다는 무임승차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관 이기주의 유인이 여전히 존재²⁾. KiRi

2) 임종룡(2001),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나라경제
이지연(1999), 대출금 출자전환의 미시적 분석, 금융연구 13-1